

대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 및 정책

I. 서론

II.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만 헌법 규정

1. 기본국가정책으로서의 국민경제
2. 헌법 국민경제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III. 중소기업 보호 관련 법제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의 정의
3.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제

IV. 일자리 창출 관련 법제

1. 취업서비스법
2. 취업보험법
3. 취업촉진보조금 실시방법
4. 기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제

V. 결론

한 득 희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특집]

2012년도 특집호는 향후 국가적 의제의 중심이 될 '경제민주화'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 서론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만은 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더불어 ‘동아시아 발전 모델’로도 불리는 대만은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진행된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대만과 우리나라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 주었고,¹⁾ 이러한 차이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제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만의 헌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만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제를 간략히 소개한 후,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대만 법제 또한 소개하고자 한다.

II.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만 헌법 규정

1. 기본국가정책으로서의 국민경제

1947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대만 헌법은 서언을 제외하고 총 14장 17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념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의 보장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체제 및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분권의 구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보장과 정부체제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대만 헌법은 국민경제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만 헌법 제13장 ‘기본국가정책’에서는 국방, 외교, 교육문화 등에 관한 중대한 국가정책 이외에 제3절 ‘국민경제’ 아래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민경제’는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는 다소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민 전체의 생활과 생계까지 고려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즉, 특정 영토 내에 있는 전체 국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경제의 생존 및 발전을

1) 김범석, 「갈라지는 민주화의 길: 대만과 한국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2권 2호, 2002. 7, 237면.

2) 胡春雷, 「憲法「國民經濟」條文之探討」, 經濟研究, 第5卷, 2004. 12, 8면 참조.

도모하고 국민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념에 따라 소득의 분배, 적시의 공공재 제공, 생태환경파괴의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³⁾ 총 10개 조문(제142조~제151조)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 부분이 행정(9개 조문), 사법(6개 조문) 등의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더 많은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국민경제가 대만 헌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국가정책에 있어서 경제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대만 헌법 추가수정조문(憲法增修條文)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역시 국민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⁴⁾

2. 헌법 국민경제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대만 헌법 제3절 국민경제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의 기본원칙

대만 헌법 제142조에 따르면,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만의 국민경제는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고, 나아가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고 함으로써 국가 정책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또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만은 성장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리나라와 달리 국부(國父)로 불리는 쑨원(孫文)의 민생주의를 국민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2) 국민경제의 토지 규범

대만 헌법은 국민경제에 관한 세부내용으로 우선 토지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제142조에서 정한 토지균분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보

3) 胡春雷, 앞의 글, 22면.

4) 이 중에서도 특히 제3항(국가는 국민의 중소형 경제사업을 지원해야 하고 그 생존과 발전을 보호해야 함)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법제에 대해서는 본문 III.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인다.

헌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이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소유권은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받아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이로써 대만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라도 토지수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⁵⁾

3) 국민경제의 자본 규범

앞서 민생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의 하나로 토지균분과 함께 자본절약을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대만 헌법은 제144조와 제145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44조에 따르면,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이로써 헌법은 공공성을 띤 사업이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영(私營) 아닌 공영(公營)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대만 헌법 제145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언제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경제의 기본원칙인 민생주의에 입각하여, 대만 헌법은 지역의 균등한 발전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서, 헌법 제147조 제1항은 “중양은 성(省)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貧瘠)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성은 현(縣)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민경제의 금융정책 규범

금융에 대해서도 대만 헌법 제149조는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

5) 토지균분에 관한 조항 중에서 특히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의 징수 관련 규정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賴英照, 「憲法與國民經濟問題」, 中樞慶祝行憲暨國父紀念月會專題報告, 2003, 3-4면 참조.

리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는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가 금융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또한 실업을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구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는 규정이다.

Ⅲ. 대만의 중소기업 보호 관련 법제

1. 중소기업 현황

대만 중소기업의 주관부서인 경제부 중소기업처(經濟部中小企業處)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대만의 전체 기업 수는 1,31만 791개이고, 이 중 중소기업은 총 1,27만 9,784개에 이르며, 무려 전체 기업 수의 97.63%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만여 개의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2.55%에 달한다. 또한, 2011년도에 신설된 9만 9,827개 기업(즉, 경영 1년 미만의 기업) 가운데 무려 99.76%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총 9만 9,584개에 이른다. 최근 대만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2010-2011년도 대만 기업의 규모별 현황⁶⁾

(단위: 개/백만NT\$/천명/%)

지표	전체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기업 수	1,277,585	1,310,791	1,247,998	1,279,784	29,587	31,007
비율	100.00	100.00	97.68	97.63	2.32	2.37
증가율	1.54	2.60	1.30	2.55	12.78	4.80
매출액	36,239,637	37,881,681	10,709,005	11,226,933	25,530,632	26,654,748
비율	100.00	100.00	29.55	29.64	70.45	70.36
증가율	20.87	4.53	16.54	4.84	22.79	4.40
취업인 수	10,493	10,709	8,191	8,337	1,253	1,334
비율	100.00	100.00	78.06	77.85	11.94	12.46
증가율	2.09	2.06	1.56	1.78	6.77	6.50

6) 經濟部, 「2012中小企業白皮書」, 經濟部中小企業處, 48면(表2-1-1) 참조.

지표	전체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피고용인 수	8,104	8,328	5,805	5,958	1,250	1,332
비율	100.00	100.00	71.63	71.54	15.42	15.99
증가율	2.72	2.77	2.22	2.64	6.73	6.58

비고: 위 표에서 전체 기업의 취업인 수와 피고용인 수 및 그 비율은 정부에 의해 고용된 104만 명 및 그 비율을 포함하지 않음(정부 고용인원은 전체 취업인구의 9.69%, 전체 피고용인 수의 12.48% 차지).

이처럼 대만의 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중소기업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 대만 국민당 정부가 원주민에 대한 포섭정책의 일환으로 자유로운 기업 창업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대만은 사회의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발전 전략을 취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우선정책을 추진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나 부의 분배 및 고용의 양극화 문제는 대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고 있는 형편이다.⁷⁾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는 대기업 규제 관련 규정이 공정거래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대만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취지의 법제가 발달하였다.

2. 중소기업의 정의

대만은 중소기업인정표준(中小企業認定標準)(이하 “인정표준”)에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정의를 양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⁸⁾ 인정표준 제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회사등기 또는 상업등기를 하고 다음 <표 2>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事業)이다.

- 7)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대만의 경제발전 모델-한국경제와 비교」, 경제통상연구센터 정책보고서, 2005. 11, 3면.
 8) 우리나라는 대만과 달리 중소기업법에 양적 기준(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과 질적 기준(실질적인 독립성)을 모두 두고 있다. 김진수·송은주·마정화,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세법연구 07-04, 2007. 11, 62면.

〈표 2〉 대만의 중소기업 기준⁹⁾

산업분류	중소기업	
	원칙	예외
제조업, 건설업, 광업, 토석채취업	납입자본금 < NT\$8천만 ¹⁰⁾	종업원 수 < 200인
상업, 서비스업 등 기타 산업	전년도 영업총수익 < NT\$1억	종업원 수 < 50인

인정표준에 따르면, 대만은 원칙적으로 산업분류에 따라 납입자본금(pain-in capital) 또는 전년도 영업총수익(sales revenue)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 개별지침을 제공하는 경우 상시 종업원의 수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제조업, 건설업, 광업, 토석채취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납입자본금 NT\$8천만 미만, 예외적으로는 종업원 수 200인 미만인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밖에 농업, 임업, 어업, 수도 전기 가스, 상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공상서비스업, 사회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영업총수익 NT\$1억 미만, 예외적으로 종업원 수 50인 미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대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는 종업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각 지원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종업원 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표준상 소규모기업(小規模企業)으로 분류된다.¹¹⁾

3.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제

1) 중소기업발전조례(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의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발전조례는 중소기업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상호협력을 추진하여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 6장 40조로 구성된 중소기업발전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 및 보증(제2장), 경영관리 시장 및 상품의 개발(제3장), 조세의 감면(제4장), 공공조달 및 공공사업

9) 중소기업인정표준 제2조.

10) 현행 대만의 화폐는 NT\$로 표기하는데, 이는 화폐개혁을 하면서 만든 뉴 타이완 달러(New Taiwan Dollar)의 약칭이며, 중문으로는 원(圓)으로 표기한다.

11) 중소기업인정기준 제3조.

에 관한 지원(제5장) 등 다방면에 걸쳐 중소기업의 발전 및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주관기관인 경제부(직할시나 현의 경우는 직할시 또는 현 정부)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조사 및 개발, 경영합리화의 촉진, 상호협력의 추진, 생산요소 및 기술의 확보, 인재의 육성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창업 및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대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을 중소기업발전조례 제4장 ‘조세의 감면’(제33조~제36-1조)이라는 별도의 장에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투자자가 공업구(工業區)에서 중소기업에 토지를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은 납세담보로 사용할 수 있고,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는 그 토지투자를 한 연도부터 5년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이 공장을 공업구 등으로 옮기면서 원래의 공장용지를 매각 또는 이전할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증치세는 최저과세구간의 세율로 징수한다.
- ③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험비용은 당해 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고, 연구발전 실험 또는 품질검사용에 제공되는 기기설비는 그 내용연수(耐用年數)가 2년 이상인 것은 내용연수를 1/2로 단축해서 감가상각한다.
- ④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을 한도로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
- ⑤ 중소기업개발공사¹²⁾가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에 충당한다.

2) 중소기업혁신촉진을 위한 고용인원 신규증가에 관한 보조방법(促進中小企業創新增雇員工補助辦法)

총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보조방법에 따르면, 중앙 주관기관인 경제부는 중소기업의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인원을 증가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고용인원 증가를 위한 보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직원의 소양을 제고하며, 국민의 취업

12) 중소기업개발공사(中小企業開發公司)란 납입자본이 NT\$2억 이상이고 회사 명칭에 “중소기업개발” 6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 주관기관의 인정증명서를 취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국내외 기술협력이나 시장 및 상품개발 또는 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자문, 중소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 중소기업 자금의 중장기 계획, 중소기업 경영의 관리계획 및 자문 등의 업무에 한하여 운영되는 주식유한회사이다. 중소기업개발공사 설립운영 관리방법 제2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보조방법의 목적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신규증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 보조방법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중소기업 보도체계의 확립 및 보도방법(中小企業輔導體系建立及輔導辦法)

중소기업발전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보도방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관기관은 재무융자, 경영관리, 생산기술, 연구개발, 정보관리, 공업안전, 오염방지, 상호협력, 품질향상, 창업육성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 및 보도체계(輔導體系)를 마련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관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및 지도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타 중소기업발전 관련 법규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정부의 공공조달이나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에 대한 원조방법(扶助中小企業參與政府採購辦法)’이 시행되고 있고, ‘중소기업발전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방법(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과 ‘중소기업개발회사 설립운영 관리방법(中小企業開發公司設立營運管理辦法)’ 등의 법규도 마련되어 있다.

5) 기타 법률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이상에서 소개한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규 이외에도, 일부 법률에 중소기업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일찍이 1976년에 공포된 대만 은행법은 제96조에 전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주는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생산설비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장기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¹³⁾ 또한, 대만 공정거래법(公平交易法) 제14조는 사업 간의 연합행위

13) 대만중소기업은행(台灣中小企業銀行股份有限公司)의 전신은 일찍이 1915년에 설립된 대만무진주식회사(台灣無盡株式會社)이고, 1976년 은행법의 시행에 따라 대만 최초의 중소기업 융자 및 지원 전문은행으로 바뀌었다가 1998년부터 민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聯合行爲, 즉 카르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또는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카르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전체와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IV. 대만의 일자리 창출 관련 법제

1. 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1) 법의 구조 및 입법취지

대만 취업서비스법은 총칙, 정부 취업서비스, 취업촉진, 민간 취업서비스, 외국인의 초빙 고용 및 관리, 벌칙, 부칙 등 총 7장 8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서비스법은 국민의 취업을 촉진하여 사회 및 경제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취업서비스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 따르면, ‘취업서비스(就業服務)’란 국민의 취업과 고용주의 직원모집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직원을 모집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 점,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 양자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점이 이 법의 특징이다.

2) 취업서비스의 기본원칙

취업서비스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취업서비스법은 양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평등, 취업기회 보장, 자료비밀유지, 노사분쟁 시 알선금지 등 4가지의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1) 서비스 평등의 원칙

취업서비스법에 따르면, 국민은 직업의 선택과 취업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한편으로, 국민은 법률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제3조). 다른 한편으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민은 취업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4조).

(2) 취업기회 보장의 원칙

취업기회 보장의 원칙은 취업서비스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칙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취업차별의 금지와 부당한 인재채용의 금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제5조 제1항은 국민의 취업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구직자 또는 피고용인에 대해 민족, 계급, 언어, 사상, 종교, 정당, 원적지, 출생지, 성별, 성적 취향, 연령, 혼인, 용모, 이목구비, 심신장애 또는 과거의 노동조합원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출생지와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과 최근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성적 취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취업차별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할시 및 현(시) 주관기관은 위반자를 NT\$30만 이상 NT\$15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립 취업서비스기구의 경우에는 위 차별금지조항에 어긋나는 광고 또는 기타 게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가 주관기관에 의해 폐지되며, 당해 취업서비스기구의 책임자 또는 대표자는 2년 이내에 사립 취업서비스기구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취업서비스법 제5조 제2항은 고용자가 직원을 모집하거나 고용하는 과정에서 ① 사실과 어긋나는 광고 또는 게시를 하거나, ② 구직자 또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를 돌려주지 않거나, ③ 구직자 또는 직원의 재물 또는 보증금을 압류하거나, ④ 구직자 또는 직원이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⑤ 외국인 초빙 고용을 위한 허가신청, 모집, 관리 등에 있어서 사실과 어긋나는 자료 또는 건강검진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3) 자료 비밀유지의 원칙

취업서비스법 제9조에 따르면, 취업서비스기구와 그 구성원은 취업알선의 목적 이외에는 고용주 및 구직자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취업 관련 자료의 취급문제는 위 취업서비스법의 규정 외에도 컴퓨터처리개인자료보호법(電腦處理個人資料保護法)의 적용을 받으며, 사립 취업서비스기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립취업서비스기구 컴퓨터처리개인자료 관리방법(私立就業服務機構電腦處理個人資料管理辦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료안전, 설비관리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호를 위한 각종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하여 이행할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4) 노사분쟁 시 알선금지의 원칙

취업서비스법은 취업서비스기구가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는 취업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취업서비스법 제10조에 따르면, 적법하게 파업을 하고 있는 기간 또는 근로계약의 중지로 인해 근로자측 다수인의 권리와 관련된 노사분쟁의 조정기간 동안에 취업서비스기구는 구직자에게 당해 파업 또는 노동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의 취업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2. 취업보험법(就業保險法)

총 8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된 취업보험법은 노동취업기능을 향상하고 취업을 촉진하면서 노동자의 직업훈련 및 일정한 실업기간 동안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이다. 취업보험의 중앙 주관기관은 노동자보험국(勞工保險局)으로, 취업보험의 보험인이 된다.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화민국 국적 소지자, 중화민국 호적 소지자와 결혼하여 거류권(居留權)을 획득하고 대만에 거주 중인 외국인, 중국 대륙지역의 인민, 홍콩 및 마카오 거주민 노동자는 그 고용주 또는 소속기구가 보험가입기구가 되며, 취업보험에 참여하는 피보험인이 된다.

취업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취업보험의 보험요율은 중앙 주관기관인 노동자보험국에서 피보험인의 당월 보험가입 임금의 1% ~ 2%에 따라 정한다. 또한, 취업보험의 지급은 구체적으로 ① 실업급여, ② 조기취업 장려 보조금, ③ 직업훈련 생활보조금, ④ 육아휴직 보조금, ⑤ 실업한 피보험인 및 피보험인의 피부양자의 전국국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 보험비 보조금 등 총 5가지를 포함한다.

3. 취업촉진보조금 실시방법(就業促進津貼實施辦法)

취업서비스법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취업촉진보조금 실시방법은 취업촉진조치를 운용하고 실업기간 동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직시장에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실시방법의 적용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 실업자, 그리고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수탁기관이며, 여기서 말하는 수탁기관은 중앙 주관기관의 위탁을 받은 사립 취업서비스기구를 비롯하여 취업촉진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취업촉진보조금에는 ① 구직교통보조금, ② 임시업무보조금, ③ 직업훈련 생활보조금, ④ 창업대출 이자보조금, ⑤ 취업알선 중개보조금 등이 있다.

4. 기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제

앞서 소개한 취업촉진 관련 법제 이외에도 2010년 5월 5일부터 취업보험 촉진취업 실시방법(就業保險 促進就業 實施辦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실시방법은 피보험인의 고용 안정조치와 고용 장려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대만 원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노동권 및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원주민족노동권보장법(原住民族工作權保障法)도 대만 특유의 일자리 창출 법제의 하나로 평가된다. 대만은 이 밖에도 심신장애자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법규, 국군퇴역장병의 취업안치를 위한 법규, 취업안정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규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대만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저 대만은 헌법에서 ‘국민경제’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토지, 자본, 금융정책 등에 관한 국민경제의 규범을 두고 있다. 대만은 민간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쳐 왔고, 그 결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대만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대만은 중소기업발전조례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중소기업 관련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취업서비스법을 필두로 취업보험법, 취업촉진보조금 실시방법 등과 같은 법률 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 등과 같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만 법제도 상당히 있으나, 본문은 주로 대만의 특색 있는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법제에 대해 소개하였고, 기타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 經濟部, 「2012中小企業白皮書」, 經濟部中小企業處, 2012. 8.
- 張英磊, 「發展經濟學思潮與法制變遷——以台灣公營事業相關法制之變革為例」, 財產法暨經濟法, 第23期, 2010. 9.
- 許金龍, 「就業服務法及子法解析」, 2010. 9. 21.
- 黃剛·謝沛善·蔡幸, 「日本,韓國,台灣中小企業發展的金融支持經驗及啓示」, 廣西商業高等專科學校學報, 第22卷第4期, 2005. 12.
- 胡春雷, 「憲法「國民經濟」條文之探討」, 經濟研究, 第5卷, 2004. 12.
- 賴英照, 「憲法與國民經濟問題」, 中樞慶祝行憲暨國父紀念月會專題報告, 2003.
- 盧文吉, 「政治民主化與經濟發展關係之研究——以台灣為例」, 真理大學財經學術研討會論文集, 2005.
- 陳榮隆, 「維護經濟秩序的憲法——公平交易法」, 國立中央大學新世紀的法律課題講義, 2004.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대만의 경제발전 모델-한국경제와 비교」, 경제통상연구센터 정책보고서, 2005. 11.
- 김범석, 「갈라지는 민주화의 길: 대만과 한국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2권 2호, 2002. 7.
- 김진수·송은주·마정화,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세법연구 07-04, 2007. 11.